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40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07. 04.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07. 05.

다. 상정·의결일자 : 2023. 07. 12.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기결

2. 개정이유

체육시설 신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시행(2022. 6. 16.)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정비(안 제2조)

나. 신규 체육시설에 따른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 및 정비(안 별표1)

- 추가: 고성군 야구장, 전천후 테니스장,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 삭제: 공설운동장(이관)

다.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사용허가 장애인 우선순위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정비(안 제13조)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인 스포츠클럽 감면 사항 신설
 -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 사용료의 구분에 따른 감면 사항 정비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감면 사항 신설

마.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항 삭제

- 바.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정비
- 사.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성별영향평가[복지지원과-22835(2023. 6. 9.)]: 반영

| 조례안 | 수정안(검토의견) | 검토결과 |
|-------------------------------|---|--|
| □ 해당조항: 제13조(사용료의 감면)제2항. 제3항 | □ 제13조(사용료의 감면)제3항 100분의 50 감경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을 추가. |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2항, 제3항 감경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을 추가하여 반영코자 함.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964호
 - 가) 예고기간: 2023. 6. 1. ~ 6. 2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물가대책위원회: 원안가결[경제기업과-25536(2023. 5. 15. 신규 공공체육 시설 사용료안]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불임

5. 본문: 불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개정의 취지(필요성)

- 신규 조성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검토

-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대상 반영 및 타 부서 이관 시설 삭제(안 별표 1)
 - 신규: 고성군 야구장, 전천후 테니스장, 반다비 문화체육문화센터
 - 삭제: 공설운동장
-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장애인 우선 사용 신설(안 제4조의2)
 -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 목적에 들어맞도록 장애인 우선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함.
- 체육시설 개방 및 사용제한 정비(안 제5조, 제6조)
 - 체육시설 개방계획 수립하여 개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체육시설별 상설스포츠교실 이용계획을 군 홈페이지나 적정 장소 게시를 의무화
 - 사용허가 조건 위반 시 사용제한하고 납부한 사용료 미반환 규정
-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규정 삭제
 - 스포츠 대회 유치의 용이성과 시설 전용사용자의 관람권 발행이 사실상 없어 삭제함.
 - 안 제2조에 따라 시설을 방송, 광고, 공연, 전람 등에 사용할 수 있어 관람권 발행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정비(안 제13조)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스포츠클럽 감면사항 신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장기복무제대군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 권고사항을 반영
 -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단체 등의 행사와 개인에 대한 사용료 면제에 대해 구분 정비
-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다. 종합의견

- 반다비체육문화센터 등의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의무 면제 하거나 면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7. 12. 원안 가결함.